

##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(2001. 9. 15, 대통령령 제17363호)됨에 따라 현행 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
  - “9인 이내” 에서 ⇒ “15인 이내”로 함 (제2조)

## □ 의안전문 : 별 첨

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## □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##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9인 이내”를 “15인 이내”로 한다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p> <p>②~④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15인 이내 -----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

#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30조의3(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)①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 
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 
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 
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

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 
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
장이 정한다

### □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

제5조(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을 응한다

1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2. 주요사업의 투자심사
3.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